

TOMATOPAY 전자지불서비스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토마토페이(이하 "을"이라 함) 은 "을"의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이하 "TOMATOPAY서비스"라 함)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목적)

본계약은 "갑"이 인터넷 쇼핑몰 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을"이 제공하는 "TOMATOPAY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TOMATOPAY서비스"라 함은 "갑"이 각종 전산망을 통하여 "갑"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을"이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업자, 상품권결제업자 등 (이하 "결제기관" 이라 한다) 과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매입, 입금, 정산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 2. "인터넷 쇼핑몰"이라 함은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mark>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mark>상의 영업장을 뜻한다.
- 3. "이용자" 라 함은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TOMATOPAY서비스"를 이용하여 동구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한다.
- 4. "수수료"라 함은 "을"이 제공하는 "TOMATOPAY서비스"를"갑"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5.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용카드의 이상유무를 "갑"은 "을"에게 요청하고, "을"은 동카드를 발행한 카드사로 전송하여 거래승인 또는 거래거절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6. "매입 청구" 또는 "EDI청구" 라 함은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에 대해 "을" 또는 "갑"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이하 "매입 카드사"라 한다)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 7. "정산"이라 함은 "을"이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갑"에게 매입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8. "지불결제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그 수단으로 제시하는 신용카드정보, 소액지불정보, 은행계좌정보 등을 총칭한다.
- 9. "금융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이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행을 위해 "을"과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사 등과 연결된 전산기기 시스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 10. "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갑"이 신용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한 거래 대금이 "을"이 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입되고, "을"은 동 매입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11. "중계대행 서비스"라 함은 "갑"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한 거래 대금을 직접 매입 받으며, "을"은 "갑"에게 "TOMATOPAY서비스"중계대행 이용료를 부과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3조 (서비스 범위)

"TOMATOPAY" 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용카드 결제대행(대표가맹) 및 중계대행(자체가맹)서비스
- ② 인터넷뱅킹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 ③ 은행 뱅킹시스템을 이용한 가상계좌서비스
- ④ 이동통신사업자 휴대폰 지불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휴대폰결제서비스
- ⑤ 상품권발행업자의 지불정보를 이용한 상품권결제서비스
- ⑥ 기타 "갑"과 "을"간에 협의에 의한 부대서비스

제 4조 (서비스 제공시간)

- 이 계약에서 정하는 서비스 제공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을"이 제공하는 "TOMATOPAY서비스"제공 시간은 금융거래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제공하며,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이 계약이 정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을" 또는 금융거래 정보<mark>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mark> 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을"은 동내용<mark>을"갑"에게 중단 24시간</mark> 전 에 통보하고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중지 후 24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제 5조 (책임 및 의무)

- 이 계약에서 정하는 "갑"과 "을"의 책임 및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 ① "갑"은 이용자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 등에서 "을"의 명의가 사용되나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자는"갑"이라는 점과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갑"에게 있음을 고지하여야한다.
 - ②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등과 같이 관련법령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본 서비스에 의한 매출 후 이용자의 이의제기(분실 및 도난카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미확인 등의 경우 포함)로 인한 사고처리 시 "갑"의 책임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이용자의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에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만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을"과 합의한 확인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거래로서 당해 물품 또는 서비스가 배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갑"은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을"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유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갑"은 본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변동사항에 대해 변경 후 3영업일 이내에 "을"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① "을"은 "갑"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TOMATOPAY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의 이용자가 지불한 결제대금을 원활히 "갑"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을"은 TOMATOPAY 시스템의 기능의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공지하고 기능을 추가 개선한다.
 - ④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 6조 (소프트웨어 설치)

- ① "을"은 "갑"이 "TOMATOPAY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갑"의 인<mark>터넷 쇼핑몰과 전자지불시스템을</mark>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갑"에게 제공한다.
- ② TOMATOPAY시스템과 쇼핑몰을 연결하는 샘플 프로그램의 수정<mark>은 "</mark>갑"이 하며, "을"은 수정을 위한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 ③ "갑"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제 7조 (서비스 이용제한)

"을"은 "갑"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중단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을"이 본 계약에서 "갑"에게 제공하는 "TOMATOPAY서비스"는 "갑"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한하며, 판매와 무관하게 금전융통거래, 전표 유통, 자가 매출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② "갑"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지불결제정보를 보유하거나 "갑"이 직접 이용자의 지불 정보를 대행하여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③ "갑"은 본계약 체결 시 "을"에게 고지, 설명한 상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TOMATOPAY서비스를 이용하며, 그 이외의 품목을 추가할 경우 "을"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 ④ "갑"이 제 7조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여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을"은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금 정산을 유보할 수 있다.

제 8조 (매입 및 정산 절차 등)

"갑"과 "을"은 매입 및 정산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다음 내용에 준하여 시행한다.

- 1. 신용카드 서비스의 매입 업무처리
 - ① "갑"은 "을"의 "TOMATOPAY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번호를 부여 받은 경



우에 한하여 매입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 ② "갑"은 "을"의 "TOMATOPAY서비스"를 이용해 승인번호를 받은 후 7일 이내 "을"에게 매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의 매입 요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신용카드사로 매입을 요청한다.
- ④ "을"은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 받은 입금확인 및 매입거절 내역을 "갑"에게 제공한다.
- 2. "TOMATOPAY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정산 시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한다.
 - ① "을"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갑"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정산 대금을 정산주기에 따라 "TOMATOPAY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공지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거래명세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단, "갑"이 "중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당월 "TOMATOPAY서비스" 이용 수수료 및 전자지불결제 소프트웨어 이용료 (월 가맹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월 1회 익월 10영업일 까지 "갑"에게 발행하여야 하며, "갑"은 10영업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③ 대금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견 즉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산한다.
 - ④ "갑"이 "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취소 등에 의한 매출 확정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하며, 매출확정 이후 변동된 내역에 대해서는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을"은 정산 완료 후 "갑"의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발생한 거래 취소 및 기타 차감금액에 대하여 "갑"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정산금액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⑥ "갑"이 정산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이전에 서<mark>면으로 통지하여야하며, 불확실</mark>한 통지 및 미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 ⑦ "갑"은 "TOMATOPAY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을 제 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을"과 사전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을"의 동의없는 채권양도로 인한 분쟁에 대해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 ⑧ "을"은 당월 "TOMATOPAY서비스"이용수수료 및 전자지불결제 소프트웨어 이용료(월가맹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월 1회 익월 10영업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제 9조 (신용카드 거래취소)

신용카드 거래승인 취소는 신용카드사의 취소처리 지침 및 "을"의 취소처리 절차에 따라 "갑"이 처리한다. 단, 결제대행 서비스의 경우 원활한 취소 처리를 위해 "을"은 "갑"의 취소처리 업무에 협조한다.

제 10조(매출내역의 보관 및 인계)

"갑"은 "을"의 "TOMATOPAY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이용대금의청구관련 근거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 (서비스 이용료 등)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TOMATOPAY서비스" 이용료는 별첨1. 의 "TOMATOPAY 이용신청서"



상의 초기등록비용과 연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초기등록 비용은 전자결제대행시스템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 비용으로, 전산 등록업무 완료에 따른 ID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조 (책임의 귀속 및 손해배상)

- 1. "을"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상의 신용카드 거래 시 해당 카드의 정확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 거래승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갑"이 "을"에게 전송한 신용카드판매내역이 다음 각 호 중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은 그 신용카드판매내역을 불량 또는 부정내역으로 간주하여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해당 매출을 취 소 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의 위반내용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카드소지자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 ② 물품배송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카드판매내역을 "을"에게 전송한 경우
 - ③ 사전에 물품배송 지연 사유에 대해 회원에게 유선공지를 하지 않아 해당 민원이 발생한 경우
 - ④ 최종 물품인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물품인수증' 등을 작성하여 신용카드판매내역을 "을"에게 전송한 경우
 - ⑤ 해외카드 이용서비스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를 <mark>중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mark> 이의제기 및 이에 따른 환불요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⑥ 예약서비스의 경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환불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 ⑦ 기타 본계약 제 5조의 책임 및 의무위반 또는 "갑"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제공과 관련 한 각종 소비자 민원으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3. 본 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원인 제공당사자에게 있으며, 원인 제공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4.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 게 양도, 위임, 담보 제공하는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5. 쌍방간 협의에 의한 추가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양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 13조 (담보 제공)

- 1. "갑"은 "TOMATOPAY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한 담보 제공의 수단으로 "을"이 요청하는 보증보 험증권을 제공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협의에 따라 담보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2. "을"은 "갑"이 제공한 '1항'의 담보금액에 따라 "갑"의 월간 승인 또는 정산한도를 정하며, "을"은 자체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라 "갑"에게 추가 담보의 제공 및 담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3. "을"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 시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으며, 1항에서 제공한 담보는 "갑"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않으며, "을"은 2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 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어느한쪽이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 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으로 "TOMATOPAY서비스" 이용 계약의 변경 의사를 통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 2. 계약의 해지
 - ① "갑" 또는"을"이 본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본 계약에서 정한 "갑" 또는 "을"의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 ③ "갑" 또는 "을"에게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계시된 경우
 - ④ 상호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⑤ "갑"과 "을"의 서면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⑥ 기타·상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mark>뢰도에 큰 타격을 입히는 행</mark>위를 한 경우

제 16조 (부속계약 체결)

"갑"과 "을"은 기본적인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제공, 이용 시 각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속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한다.

제 17조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그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들은 "을"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 규약 및 특약을 준용한다.

제 18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 시 "갑"과 "을"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소의 제기는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22 년 월 일

"갑" :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인)

"을":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합정동) 이토마토 빌딩, ㈜토마토페이

주식회사 토마토페이

대 표 이 사 박 서 준 (인)





[별첨 1]

TOMATOPAY 결제서비스 이용신청서

1. 사업자 정보

상호명	사업체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업태	종 목	
주 소		

2. 서비스 정보

서비스명			홈페이지 UR	RL			
이메일			서비스방식		N P	G대행 [중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정산 은행			매입요청		₩ 자-	동 수	-동 예약매입
정산 계좌번호			예금주명				
담당 구분	이름	부서/직위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실무 책임자							
개발 담당자							
정산 담당자							

3. 서비스 이용조건

	서비스명	신청	수수료율(VAT별도)	정산주기	비고
신용키	ㅏ드(웹,모바일)	X		◯D+6일/□월 4회	
실시긴	· 계좌이체			D+6일/ 월 회	
가상계	좌결제			D+6일/ 월 회	
휴대폰	·결제				
현금영	 경수증				
초기	초기등록비			보증보험증권	
비용	연관리비			기타관리비	
초기비	초기비용 입금계좌 우리은행 / 1005-180-124870 / ㈜토마토페이				



4. 구비서류(변경)

구분	기존	변경 및 추가		
	- 계약서 2부(부칙포함)	기존 제출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마스킹 없		
개인사업자	- 정산계좌사본 1부(대표자명의)	0)		
	-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명의)	- 고객정보 및 실제 소유자 확인서		
	-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또	- 실제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제 소유자 신분		
	는 주민등록등본 1부	증 앞뒤 사본 1부 (마스킹 없이)		
	- 계악서 2부(부칙포함)	기존 제출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고객정보 및 실제 소유자 확인서		
HOUGH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	- 실제 소유자 확인 가능한 서류		
법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기 관/단체)	본 1부)	(주주명부, 정관/규약, 이사회 명부 등)		
	- 정산계좌사본 1부(본인명의)	- 비영리법인의 경우 증빙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법인명	(정관/규약,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서 등)		
	의)			
	-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			

